

2015년 금융IT 감독방향과 핀테크 육성전략



2014.12.11
금융감독원

INDEX

- I . 최근 전자금융 환경
- II . 금융IT 감독 방향
- III . 핀테크 육성 전략

최근 전자금융 환경

전자금융거래 방식의 변화

□ IT기술 발달에 따라 1980년대 금융전산화를 시작으로 **스마트 banking·결제**로 변화

- 금융 전산화 → PC통신 banking →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 banking → 스마트폰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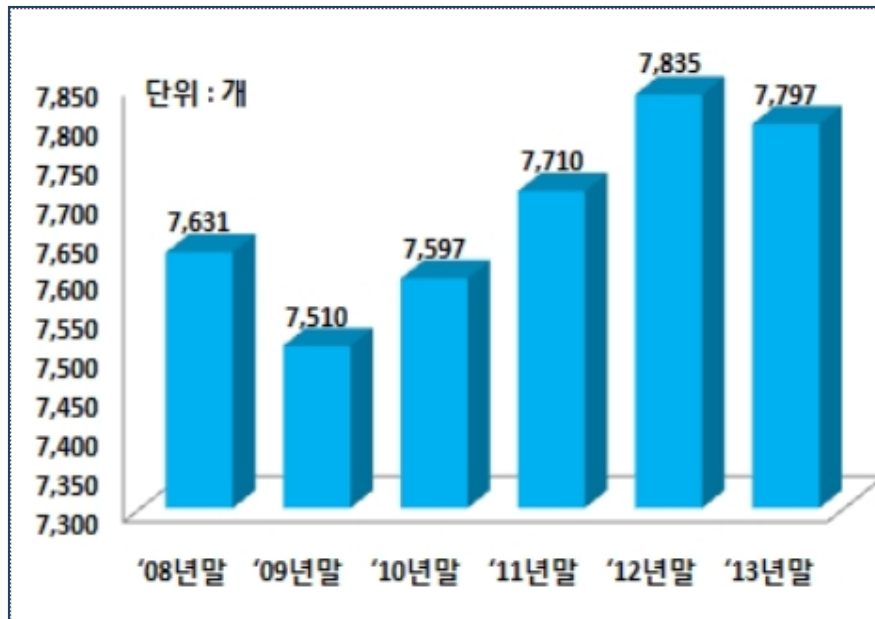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2014.7.11) 참고

전자금융채널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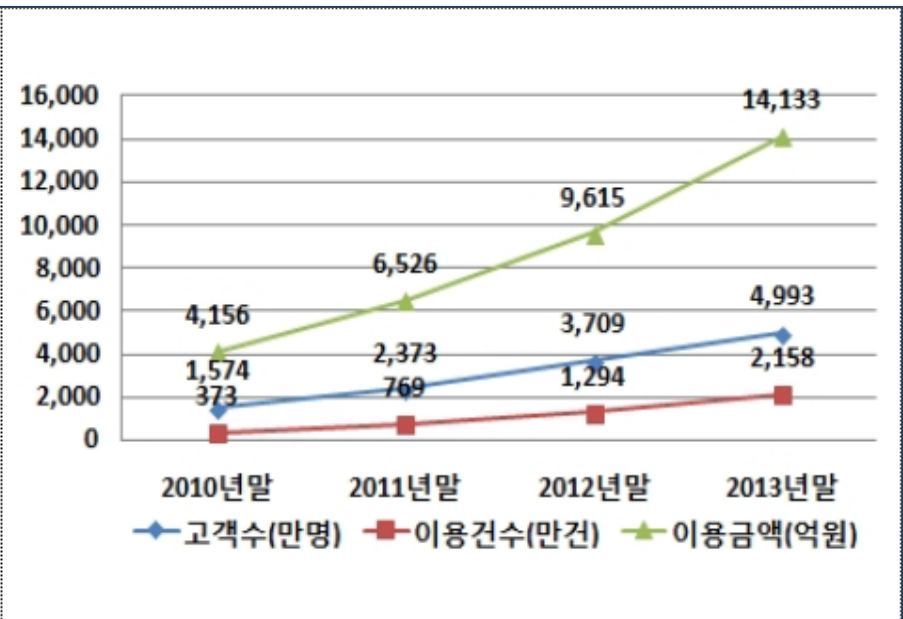
□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대면 영업채널이 모바일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로 대체

- 국내 은행은 '12년말을 정점으로 점포 감축 지속 & 모바일뱅킹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가

« 국내 은행 점포수 현황 »








« 모바일뱅킹 이용 현황 »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전자지갑, 모바일결제** 중심의 제한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기업	주요 금융서비스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 출시 예정('14.9월) - 카카오톡 기반의 주식 정보제공 및 매매서비스 '카카오 증권플러스' 출시 (주식매매 기능은 '14년 하반기 추가예정)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전자지갑서비스 '삼성월렛' 출시('13.5) - 멤버십카드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후 간편결제 기능 제공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사 모두 전자지갑 출시, 2012년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쇠락 · SKT '스마트월렛'('10), KT '모카월렛'('12), LGU+ '스마트월렛'('11) - 은행·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스마트폰의 바코드, QR(Quick Response) 코드, NFC12) 등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기능 제공
		
		

※ 외국 경우 애플, 구글 등 IT기업이 자사 플랫폼 기반으로 활발하게 금융업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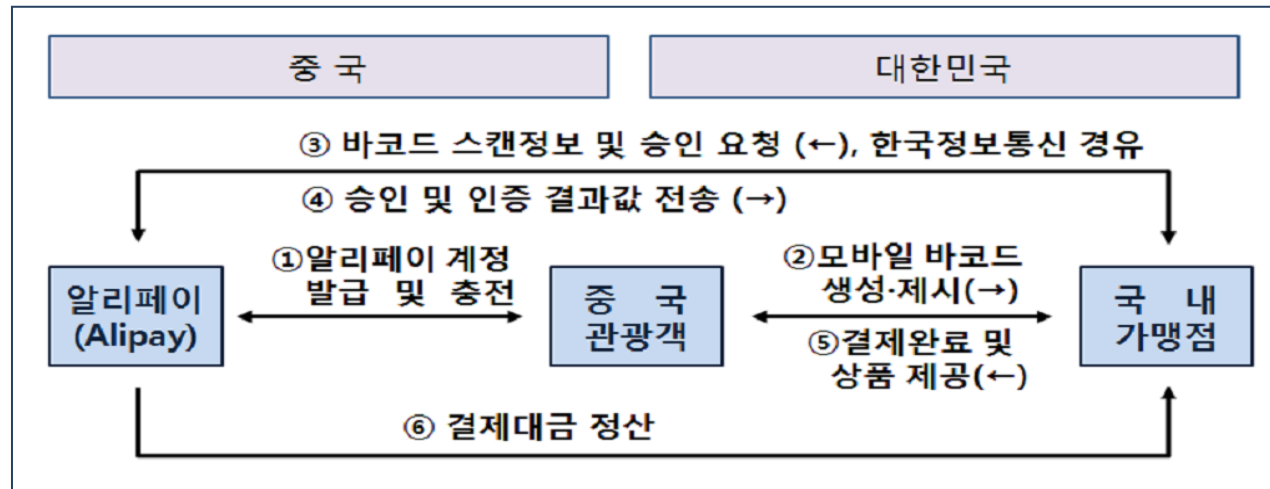
- 애플(아이폰), 구글(검색엔진),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 아마존·알리바바(전자상거래) 등

글로벌 지급결제업체의 국내 진출

□ 중국 알리페이는 '14년부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결제서비스 제공

- (온라인) 초기 K-pop티켓, WiFi사용권 결제 → 롯데닷컴 등 해외판매 전문쇼핑몰과 제휴
- (오프라인) '14.5월 롯데면세점과 가맹점 계약체결 후 명동/동대문 상권으로 영업확대

« 알리페이의 국내 Off-line 결제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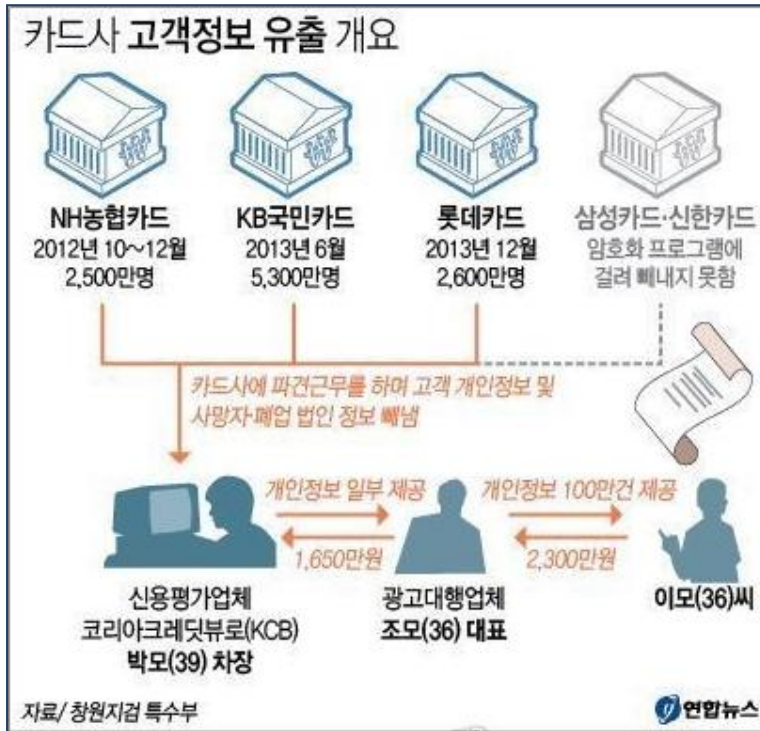


※ 페이팔, 구글, 애플 등도 국내 지급결제시장 진출 준비 중

대규모 전자금융사고

□ '14.1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3개사 1억건 이상)

□ '14.4월 삼성카드 재해복구시스템 未구축으로 **온라인 결제서비스 8일 중단** 등



삼성카드 서비스장애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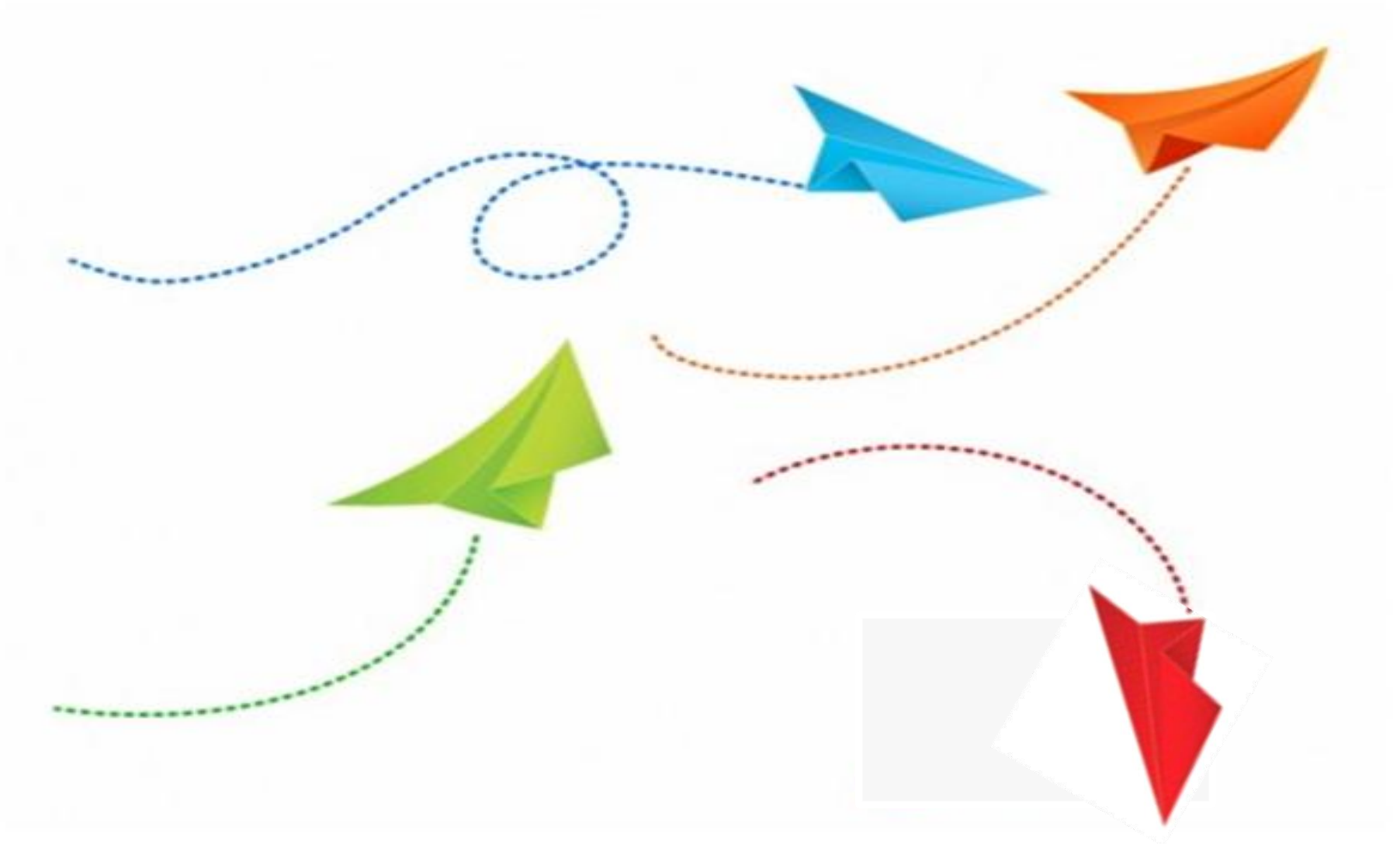
일시	온라인·모바일	문자알림 서비스	체크카드 (총 23개 제휴사)	현금인출 (총 27개)
20일 (화재 발생 당일)	불가능	불가능	18개 장애	12개 장애
21일 (오전 10시)	불가능	불가능	기업은행, 광주은행, 동부저축, 삼성증권,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KIS뱅크, 청호, 롯데피에스넷
21일 (오후 6시)	불가능	불가능	삼성증권, 기업은행, 동부저축, 광주은행	정상화
22일 (오후 6시)	불가능	불가능	정상화	정상화

금융IT 감독 방향

금융IT감독 방향



금융IT감독 방향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IT감독 · 검사 강화

- **사전예방적** IT감독 · 검사 실시
- **현장중심** 검사 강화

혁신창출 · IT보안

- 핀테크(FinTech)를 통한 **금융혁신** 지원
-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정책 추진
-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보안수준** 향상

정보유출 재발방지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총괄 · 조정

1. 전자금융 안전성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IT검사 강화

가. 사전예방적 IT감독·검사 실시

□ IT보안사고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IT보안 표준지침」 및 체크리스트로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
-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내부 IT검사 협의제도 운영방안 수립·지도

□ IT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사 **사전준비 강화**

- IT검사 실효성 제고 및 금융회사 수검 부담 경감을 위한 IT검사 사전요청자료 표준화 추진
- IT실태평가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IT검사 실효성 제고

□ IT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IT인력·예산, CISO 지정 및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 등 감독규정 준수현황 분석
- IT사고 예방효과 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금액이상 전자금융사고 공시방안 추진

1. 전자금융 안전성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IT검사 강화

나. 현장중심 검사 강화

□ IT실태평가 등 검사 실효성 제고

-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축소에 따른 간이 IT실태평가 방안 수립
- 외부 IT보안인력을 활용한 취약점 점검 및 검사결과 피드백을 통한 자율적 보안 강화유도

□ 기획·테마 검사 강화

- IT보안실태 및 고객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 카드정보 저장 PG사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무 및 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 금융지주회사 소속 주력 금융회사 검사시 지주회사 소속 IT자회사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사전협의 창구 운영 및 기술적 부문에 대한 검토·실사

2. 금융·ICT 융합으로 혁신 창출 및 IT보안 역량 강화

가. 핀테크(FinTech)를 통한 금융혁신 지원

□ 핀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감독적 지원 강화**

- ICT융합에 의한 금융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제도 등 규제개선 추진
- 신종 금융·결제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인허가 및 보안성심의 절차, 금융 법규 안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규제환경 조기적응 지원
- 국내·외 핀테크 동향 및 상담결과 등을 토대로 핀테크 지원방안 도출

2. 금융·ICT 융합으로 혁신 창출 및 IT보안 역량 강화

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IT감독 정책 추진

□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강화

- 카드정보 저장 PG업자에 대해 FDS 운영실태 및 정보유출 방지대책 등을 상시 모니터링
- 원칙 중심의 감독정책 전환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
- 전자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전자금융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 확대

□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 방지

- 글로벌업체의 국경간거래 등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소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 非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입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및 법제 조사·연구 강화

2. 금융·ICT 융합으로 혁신 창출 및 IT보안 역량 강화

다.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 향상

□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로드맵」 추진

- 금융권 FDS 및 동 관리체계 단계별 구축 및 고도화
- 「금융권 FDS 구축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FDS 구축 독려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전자금융사고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전파

□ 금융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및 Non-ActiveX 환경 구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14.9.30.)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
- 전자상거래상의 Non-ActiveX 환경구축('14년말) 및 쏘금융권 전자금융서비스로 확산('15년)

□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제도 개선

- 보안성 심의업무 신속성·전문성 강화 및 창업 기업의 신종 금융서비스 안전성 검토 지원

3. 금융권 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의 76개 세부과제 이행상황 종합 관리
-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상황 모니터링 및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

□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제도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

□ 금융회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침해 예방

- 금융회사가 주민번호 암호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및 주민번호 암호화 실태 조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상담 사례집” 발간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성화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해외송금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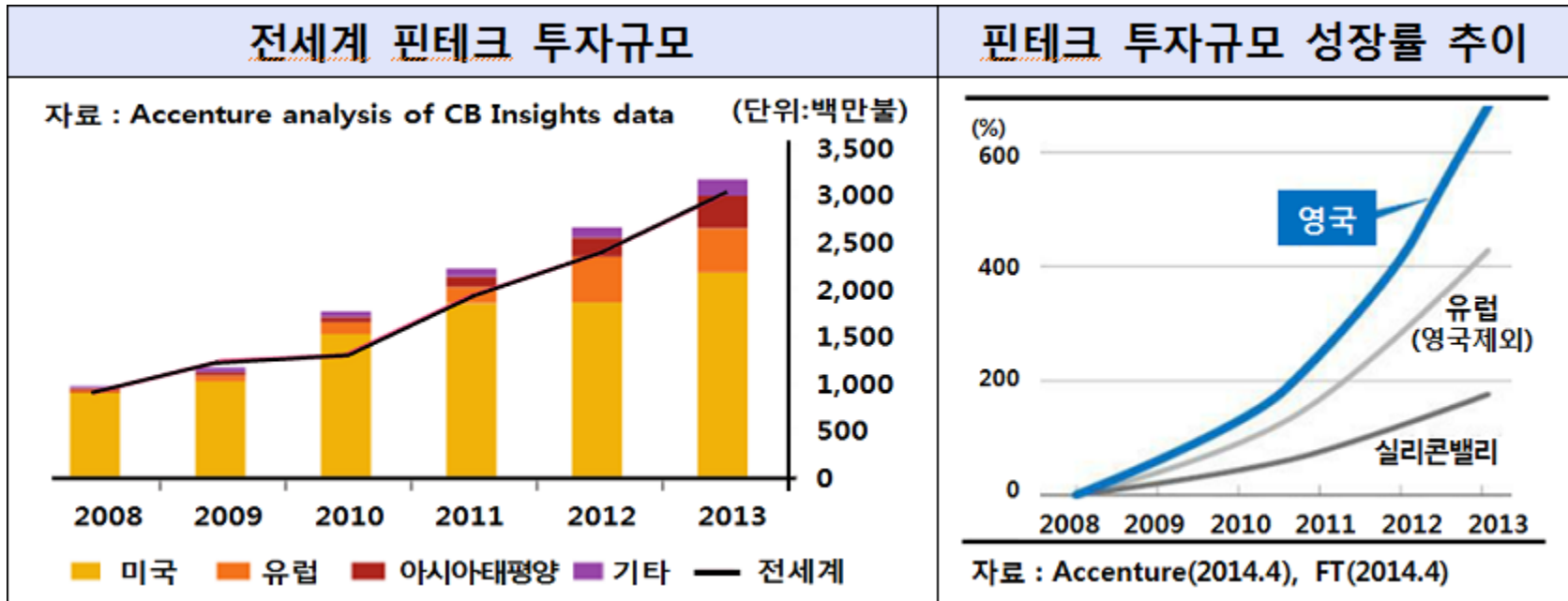
개인
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글로벌 핀테크 동향

□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 및 핀테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 5년간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성장 ('08년 9.2억 달러 → '13년 29.7억 달러)
- 특히, 영국은 5년간 7.8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600% 이상의 성장률 기록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

- '08~'13년동안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 (51%)이 실리콘밸리(23%)보다 앞서는 등 **영국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

[핀테크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핀테크혁신연구소 설립 후원('12년, 런던시)
- 인큐베이터(창업지원) 및 엑셀러레이터(벤처 성장지원 : 행정·법률자문, 외부투자자 유치 등) 육성

[**금융당국 및 정부 지원**]

- FCA내 핀테크 지원전담조직(Innovation Hub) 설치('14.10.28, 핀테크 업체 금융규제환경 조기적응 지원)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활용 대부업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법안 마련 발표('14.8.6)

[**혁신적 창업 지원 정책**]

- 법인 설립요건 완화 및 온라인 법인등기(법인등기 절차 DB화) 가능 등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 정부는 '11년 테크시티 조성안을 발표하고 런던 동부지역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개발

국내 핀테크 동향

- '10년부터 전자지갑 시장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이 발전,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간편결제가 활성화되기 시작, P2P대출 중심으로 클라우드 펀딩 산업 형성

[전자지갑 시장 경쟁 격화]

- '10년 SKT의 전자지갑 출시 후 국내 시장은 통신사(유심카드)와 금융사(앱카드) 간 경쟁구도
- '14.11월 SNS업체 카카오가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하면서 경쟁이 심화

[간편결제 활성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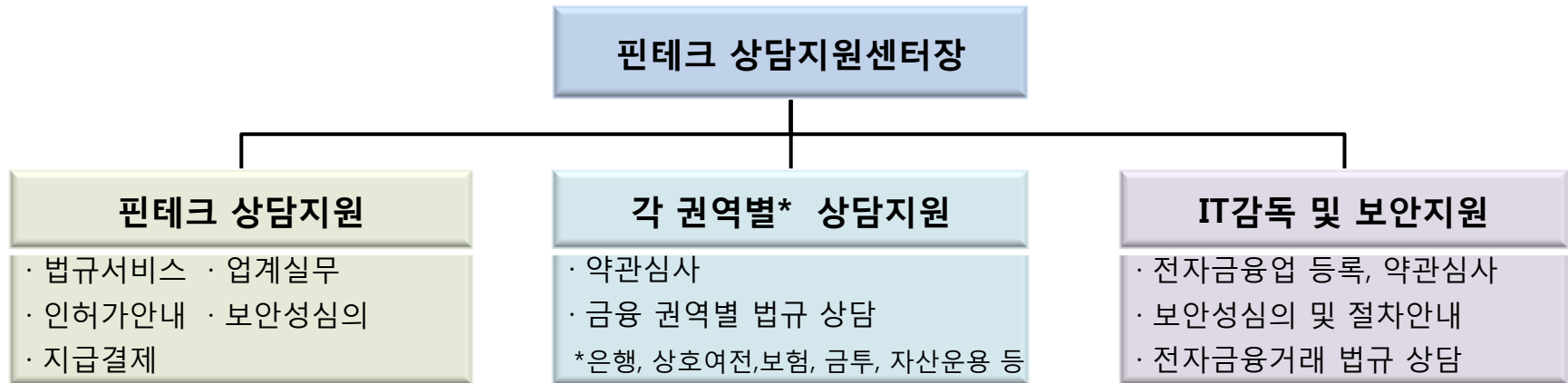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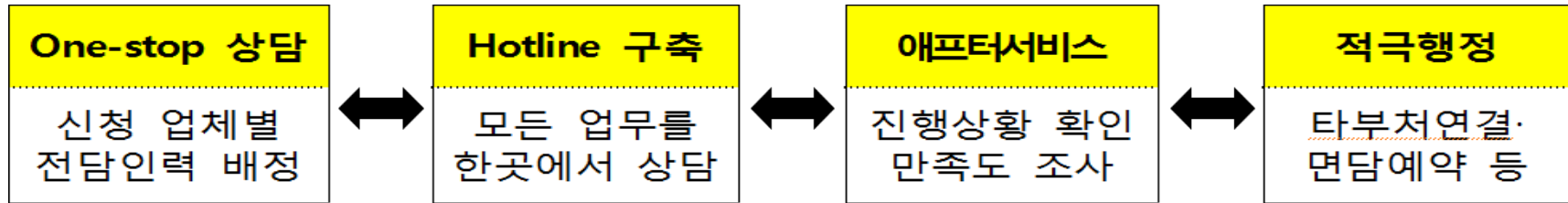
-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14.8.28) 및 카드정보 저장 PG사 보안·재무적 기준 등 마련('14.10.1)
- 최근 PG社들이 새로운 간편결제서비스를 다수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음('14.11월 9개社)

[P2P대출 위주의 클라우드 펀딩 산업]

- '11년부터 본격 성장, P2P대출이 가장 큰 비중 차지(대출 1,787억원, 기부후원 16억원, 지분투자 14억원 (~'127월))
- 국내 P2P 대출시장은 대략 500~800억원으로 추정되어 매우 영세('13년 전세계 약 16.5조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설립

- 금융감독원은 '14.11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행정자문서비스 제공
 - 관련 업계 건의, 애로사항 상담, 행정·법률자문, 보안성 심의, 상담업체 사후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Thank You !